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27

제안년월일 : 2018년 9월 6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기간을 가짐.

2. 주요 골자

○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18년 12월 1일부터로 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수 없이 하는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 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 차는 제외한다.	3.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
수 없이 하는 자동차	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